



교육성과지표 관리 규정

[제목개정 2022. 8. 1]

제정일	2020. 3. 1
개정일	2023. 8. 1
개정차수	5차
담당부서	교육혁신지원센터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의 질 관리 및 재학생 충원을 향상 등을 위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교육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육성과지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2023. 8. 1)
- 제 2조 (교육성과지표) ① 교육성과지표는 재학생 충원을, 성적부여에 관한 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지표로 한다.
 ② 교육성과지표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8. 1]
- 제 3조 (교육성과지표 관리 위원회) ① 교육성과지표 운영을 위하여 교육성과지표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1, 2023. 8. 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4.15, 2022.10. 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0. 1)
 [제목개정 2022. 8. 1, 2023. 8. 1]
- 제 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관리한다.
 1. 교육성과지표 항목 심의 (개정 2022. 8. 1, 2023. 1. 1, 2023. 8. 1)
 2. 교육성과지표 항목별 점수에 관한 심의 (개정 2022. 8. 1, 2023. 8. 1)
 3. 교육성과지표 관리를 통한 개선사항 심의 (개정 2022. 8. 1, 2023. 8. 1)
 4. (삭제 2022. 8. 1)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개정 2023. 1. 1)
- 제 5조 (교육성과지표 기준) 교육성과지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한 후 기준에 의거 관리한다. (개정 2022. 8. 1, 2023. 8. 1)
 [제목개정 2022. 8. 1, 2023. 8. 1]
- 제 6조 (계획 수립 및 개선사항 도출) ① 위원회는 교육성과지표 항목, 점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확정하고 매학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 8. 1, 2023. 8. 1)
 ② (삭제 2023. 1. 1)
 ③ 매 학년도 말 교육성과지표 관리를 위하여 교무처에서 지표를 학부(과)별로 분석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개정 2023. 1. 1, 2023. 8. 1)
- 제 7조 (관리절차) ① 교육성과지표 관리는 교무처에서 실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4.15, 2022. 8. 1, 2023. 8. 1)
 ② 교육성과지표 자료는 행정부서의 제출자료를 근거로 한다. (개정 2022. 8. 1, 2023. 8. 1)
 ③ 교무처는 교육성과지표를 행정부서와 학부(과)에 공지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개정 2021. 4.15, 2022. 8. 1, 2023. 8. 1)
- 제 8조 (개정) 규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된 내용을 개정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